

군용비행장 ·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변재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13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2. 29.

발 의 자 : 변재일 · 양향자 · 민병덕
윤영찬 · 강준현 · 윤미향
전용기 · 고용진 · 윤후덕
민형배 · 유동수 · 허영
인재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실제 근무 장소가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음대책지역 주민과 마찬가지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도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군 시설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

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제1항).
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소음대책지역 주민들”을 “소음대책지역 주민(소음대책
지역 내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들”로
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실제 거주기간”을 “실제 거주기간·근무기간”으로 한
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상금 지급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5호 및 제14조제1항
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상금을 지급 신청하는 경우부터
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4. (생략) 5. “소음피해 보상”이란 <u>소음대책지역 주민들</u>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. 6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<u>소음대책지역 주민(소음대책지역 내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 들----- ----- ----- ----- -.
제14조(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) ① 보상금은 소음영향도, <u>실제 거주기간</u>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,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. ② ~ ⑥ (생략)	제14조(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) ① ----- ---- <u>실제 거주기간 · 근무기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	② ~ ⑥ (현행과 같음)